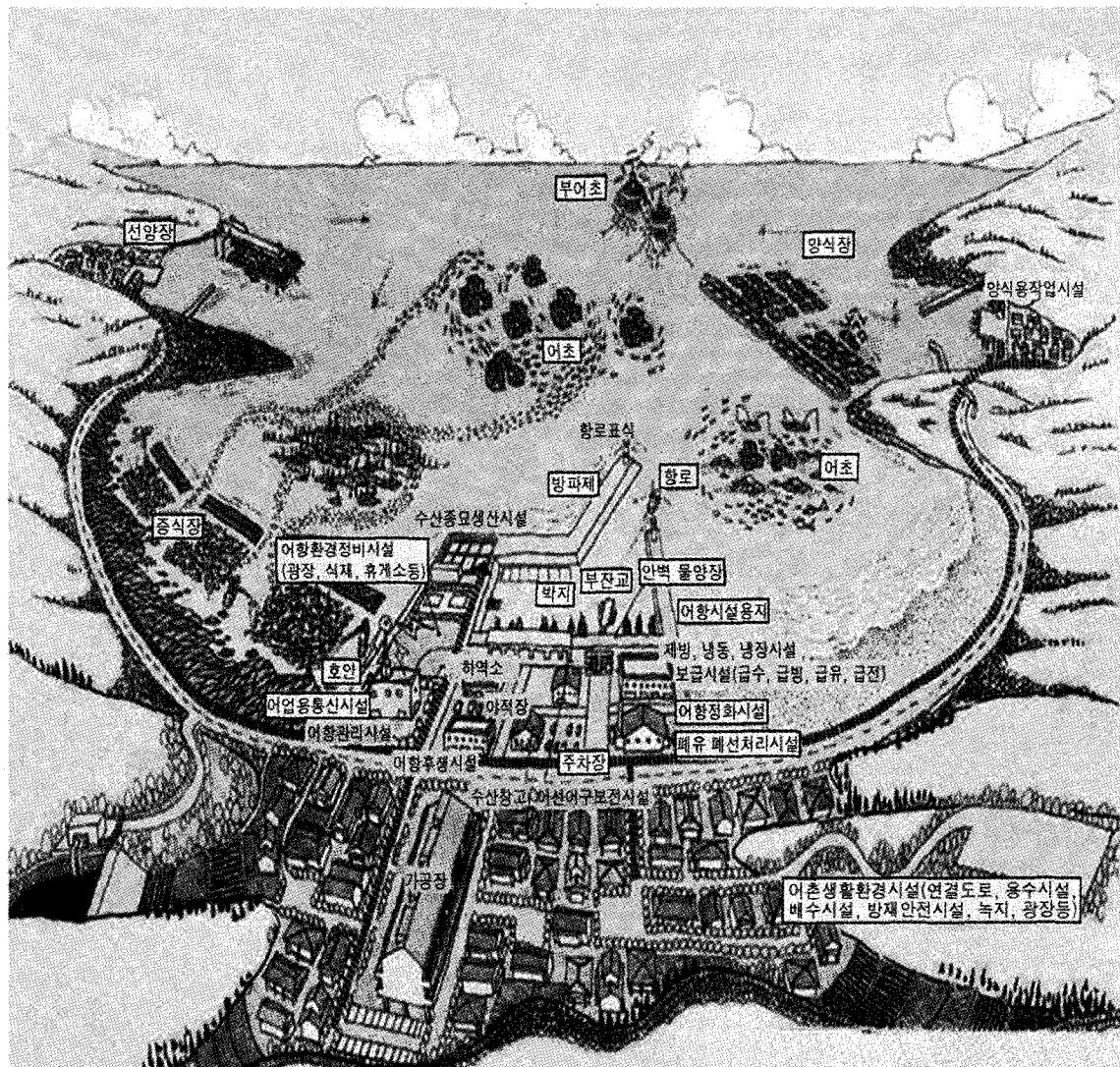


# 일본 어장 · 어항 · 어촌 정비 현황과 장기 계획

## 어장 · 어항 · 어촌의 정비 현황

### I. 오늘날 어장 · 어항 · 어촌



어장 · 어항 · 어촌의 개념도

## II. 어장 · 어항 · 어촌의 역할

- △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잘 맞는 수산물의 안정공급
  - ① 해양생물자원을 기르는 장(육성장)
  - ② 자원관리형어업 · 기르는 어업의 기지로서의 역할
    - 종묘생산이나 중간육성 등, 치어육성의 장
    - 단속선의 기지, 어장의 관리 · 감시등 자원관리의 장
  - ③ 생산활동의 지지로서의 역할
    - 어획물의 양륙장
    - 출어준비의 장(어구의 준비, 급유, 급수, 어선의 수리, 어선원의 휴양 등)
    - 어업자의 주요한 재산인 어선의 안전한 정박의 장
  - ④ 유통가공의 기지로서의 역할
    - 하역 및 시장 거래
    - 소비지로 출하하는 터미널
    - 활어유통 터미널
    - 수산가공업의 기지
- △ 지역사회의 핵으로서의 역할
  - ① 어촌주민의 생활기반
  - ② 어업 관련산업을 주로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
  - ③ 도서나 벽지에 있어서 어촌과 외부사회를 잇는 교통, 정보의 기지
  - ④ 어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
- △ 국민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가공간의 제공
  - ① 자연체험형 여가공간
  - ②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활동 거점
  - ③ 바다의 문화 계승의 장
  - ④ 바다의 체험학습의 장
- △ 어촌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의 보호
  - ① 쓰나미나 높은 파도로부터 취락 생활공간 보호
  - ② 긴급시의 물자를싣고 내리는 거점
- △ 연안역의 관리 거점으로서의 역할
  - ① 국토 · 자연환경 보전에 공헌
  - ② 불법조업 · 밀입국의 조기발견, 정보 전달

- ③ 태풍 등 기상 재해 시 선박의 피난의 장
- ④ 재해 대책 상의 역할
- ⑤ 연안역이 지니는 다면적 기능의 보전

## III. 연안의장 정비의 법제도

### (어항어장정비법)

△ 「어항법의 일부개정」(2001. 6.29)의 주요 포인트

#### 제 1. 제명 및 목적의 개정

##### 1. 제명의 개정

제1에서 제4까지의 개정에 수반하여, 제명을 「어항어장정비법」으로 개정

##### 2. 목적의 개정

제2에서 제 4까지의 개정에 수반하여, 목적규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한다.

「환경과의 조화를 배려」 및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의 진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 규정에 명기한다.

#### 제 2. 어항 및 어장의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정비

##### 1. 정의 규정의 개정

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어항정비 사업과 어장정비 개발사업을 하나로 하여 「어항어장 정비사업」으로 자리매김 한다.

##### 2. 어항어장 정비 기본방침

1)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(이하 「기본방침」이라고 한다)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2)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향, 어항어장정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3) 3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작성되며, 제3의 1의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은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한다.

### 3.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

- 1)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종합적이 고도 계획적인 실시에 도움이 되게하기 위하여, 기본방침에 따라 어항어장 정비사업에 관한 장기 계획(이하 「장기계획」이라고 한다.)의 안을 작성 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.
- 2) 장기계획은 일본 수산업의 기반정비에 있어서의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관점에서, 계획기간에 관한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실시의 목표 및 사업량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.
- 3) 장기계획 안의 작성은 관계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# 4.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의 공동작성

지방공공단체와,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확보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 공공단체와 공동으로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### 제 3. 지방 공공단체 등에 의한 주체적인 사업의 실시

#### 1.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

지방공공단체 등이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(어항어장 정비사업 중 중요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)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,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(이하 「사업계획」이라고 한다)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※ 구법에 있어서는 내각이 정하여, 국회승인을 받은 어항의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이 어항 수축 계획을 작성할 것이 의무적이었고, 지방공공단체 등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었다.

#### 2. 국가가 정하는 기준의 철폐

구법에는 지방공공단체 등은 국가가 작성한 어항 시설의 규모, 배치 및 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을 삭제 한다.

### 제4.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의 확보

#### 1. 심의회의 공개

심의회의 장기계획과 기본방침에 관한 심의는 공개하기로 하고 이들 심의에 사용된 자료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2. 기본방침, 장기계획 및 사업계획의 공표

기본방침, 장기계획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고, 또는 변경한 때에는, 자체 없이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3. 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할 때의 관계지방 공공단체 등과의 협의

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는 변경코자 할 때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 어항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4. 사업계획의 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

사업계획의 안은 20일간 공공열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, 사업계획의 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#### 5.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에 관한 수속의 정비

1)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폐지, 또는 정지코자 할 때는 관계 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.

2)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폐지, 또는 정지한 때는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.

## IV. 어항시설의 분류와 시설 설명

### △ 기본시설

- 외곽시설 – 방파제, 방사제, 방조제, 도류제, 호안, 돌제, 수문, 갑문, 제방 및 흥벽
- 계류시설 – 안벽, 물양장, 잔교, 계선부표, 계선말뚝, 부표교 및 선양장
- 수역시설 – 항로 및 박지

### △ 가능시설

- 운송시설 – 철도, 도로, 주차장, 교량, 운하 및

### 헬리포트

- 항행 보조시설 - 항로표식 및 어선의 입출항을 위한 신호시설 및 조명시설
- 어항시설용지 - 각종 어항시설의 부지
- 어선어구 보전 시설 - 어선 보관시설, 어선 수리장 및 어구 보관수리시설
- 증식 및 양식용 시설 - 수산종묘 생산시설, 양식용 사료보관 조정시설, 양식용 작업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
- 어획물의 처리 보장 및 가공시설 - 하역소, 하역기계, 축양시설, 수산창고, 야적장, 제빙, 냉동과 냉장시설 및 가공장
- 어업용 통신시설 - 육상무선전신, 육상무선전화 및 기상신호소
- 어항후생시설 - 어항관계자의 숙박소, 목욕탕, 진료소 및 기타의 복리후생시설
- 어항관리시설 - 관리사무소, 어항관리용 자재창고, 선박 보관시설 기타의 어항 관리를 위한 시설
- 어항정화시설 - 공해 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기타의 정화시설
- 폐유처리시설 - 어선내에서 발생한 폐유의 처리를 위한 시설
- 폐선처리시설 - 어선의 파쇄 기타의 처리를 위한 시설
- 어항환경정비시설 - 광장, 식재, 휴게소, 기타의 어항 환경의 정비를 위한 시설

### ■ 어장의 분류

#### (1) 어초어장

주로 어류의 운집, 발생 및 성육이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생산성이 높은 인공어장, 내구성 구조물(콘크리트 블록 등)의 설치에 의하여 정비되는 어장

#### (2) 증식장

해역과 이에 인접하는 육지에 있어서 유용 수산생물의 발생과 성육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

하는 차정기질의 설치(투석, 콘크리트 블록 등의 설치와 간석(간석 및 구획 시설)의 조성), 소파시설 등 (소파제, 잠제, 이안제 및 방빙제)의 설치, 해수교류시설(도류제, 수로 등)의 설치, 중간육성시설의 설치 및 용지(중간육성 시설설치용, 작업로 등)의 조성과 이에 관련하는 시설(펌프, 휴식공간 등 간단한 부수시설)의 설치에 의하여 정비되는 어장

#### (3) 양식장

해역과 이에 인접하는 육지 중, 미아용 상태에 있는 양식 적지에 생산성이 높은 양식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소파시설 등 (소파제, 잠제, 부소파제 및 방빙제)의 설치, 구획시설의 설치, 해수교류시설(도류제, 수문, 수로, 도수터널 등)의 설치, 저질개선(수로파기, 준설, 객토, 경운 등) 및 용지(양식시설용)의 조정과 이와 관련하는 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정비되는 어장

##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

### ■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의 개요

#### 1) 취지

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은 수산업의 발본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, 어장·어항·어촌의 정비를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책의 목적이나 성과에 중점을 두고 책정(2002년 3월 26일 각의결정)하고 있다.

#### 2) 내용

##### ① 계획기간 :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

##### ② 실시의 목표

어항어장 정비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본과제와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대처한다.

- i.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의 정비
- ii.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등의 적극적

## 인보전·창조

iii. 수산업의 진흥을 핵으로 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형성을 지향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이상의 대처를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략 10년후를 목표로

- 1975년이후(200해리도입시)의 어장환경이나 연안 어업의 생산을 염두에 두고 어항어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역의 어장환경의 회복과 어업생산량의 증산(37만톤)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유통의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한다.

- 어업집락배수처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있는 어촌의 처리 인구비율을 소도시정도로 할 것을 목표로 어

항·어장의 수역환경과 어촌의 생활환경·작업환경의 개선을 시도한다.

## ③사업량

계획기간(5개년간)의 사업량은 정비하는 대상을 종점하여 다음과 같다.

- i.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할 거점 중대력 750지구, 생산유통의 효율화와 품질·위생관리의 강화를 시도할 거점 중 대략 350지구를 정비
- ii. 대략 5천ha의 조장·간석의 조성에 상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새로이 보전·창조
- iii.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대략 430지구에서 실시

## 일본 수산 관련 단체 째면 연왕

